

진도군 공고 제2024-622호

제29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9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진 도 군 수

1. 제29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298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각 1부.

목 록

| 안전번호 | 부 의 안 건 | 담당부서 | 비고 |
|---------|----------------------------------|-------------|----|
| 2024-72 |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기 획 홍 보 실 | |
| 2024-73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 획 홍 보 실 | |
| 2024-74 |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전생활지원과 | |
| 2024-75 |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 총 무 과 | |
| 2024-76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 제 에 너 지 과 | |
| 2024-77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감 염 병 관 리 과 | |
| 2024-78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 획 홍 보 실 | |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72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군의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3조)
 - (목적) 진도군이 시행하는 시책 등이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 (정의) “시책 등”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 “일몰”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의미
 - (적용범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
- 일몰의 심의·결정(안 제4조)
 -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
- 일몰대상 시책(안 제5조)
 -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 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진도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및 의견청취(안 제7조~8조)

- 경미한 시책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가능

○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진행
- 진도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

○ 일몰 시책의 공개(안 제10조)

-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진도군 누리집에 공개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5. 22. ~ 6. 1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참여 명시
→ 개선의견 반영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6. 26.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진도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

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진도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진도군



수신 기획홍보실장

[경유]

제목 2024년 제16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4년 제16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4. 6. 26.)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의안번호 | 자치법규명 | 심의결과 | 소관부서 | 비고 |
|---------|------------------|------|-------|----|
| 2024-50 |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통과의결 | 기획홍보실 | |

붙임 심의 의결서 1부, 끝.

진도군수

주무관 **이재현** 담당의비서관 **홍남이** 기획홍보실장 **전영 2024. 6. 26.**
정기훈

참조자

시행: 기획홍보실-4122 접수

주: 58915 전자담당: 진도군 진도읍 활약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8 팩스번호: 061-540-3049 / jin@jin029.kr / jin@jin029.kr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권(061)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 번호 | 제목 | 신청자 | 심 의 요 지 | 심의결과 |
|---------|------------------|--------|--|------|
| 2024-50 | 진도군 시책일괄제 운영 조례안 | 기획홍보실장 | ○제정이유 -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중이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져 상적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군의 건정제상을 도모하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목적 등어의 설치 조항의 적용 범위 불명 제1조~제15조 등 | 승인요청 |

위와 같이 의결함
2024. 6. 26.

| 구분 | 직 | 위 | 성명 | 개의 | 부(否) | 부(否) 사유 |
|-----|-----------|-----|-----|-----|------|---------|
| 의장 | 군수 | 집회수 | 김희수 | 김희수 | | |
| 부의장 | 군수 | 우홍섭 | 우홍섭 | | | |
| 위원 | 기획홍보실장 | 정기문 | 정기문 | 정기문 | | |
| * | 인구정책실장 | 허수철 | 허수철 | 허수철 | | |
| * | 안전상황지원과장 | - | - | | | |
| * | 총무과장 | 이용복 | 이용복 | 이용복 | | |
| * | 세무회계과장 | 박정현 | 박정현 | 박정현 | | |
| * | 법률봉사과장 | 허승목 | 허승목 | | | |
| * | 수산지원과장 | 박태준 | 박태준 | 박태준 | | |
| * | 진도개축안과장 | 장경화 | 장경화 | | | |
| * | 해안방안과장 | 곽상규 | 곽상규 | 곽상규 | | |
| * | 경제에너지과장 | 김영복 | 김영복 | 김영복 | | |
| * | 주민복지과장 | 이희애 | 이희애 | 이희애 | | |
| * | 가족행복과장 | 김기형 | 김기형 | 김기형 | | |
| * | 관광과장 | 최정자 | 최정자 | 최정자 | | |
| * | 문화예술체육과장 | 김경숙 | 김경숙 | 김경숙 | | |
| * | 건설과장 | 박재현 | 박재현 | 박재현 | | |
| * | 도시개발과장 | 이창민 | 이창민 | 이창민 | | |
| * | 환경수질과장 | 이재권 | 이재권 | 이재권 | | |
| * | 산림휴양과장 | 장재필 | 장재필 | 장재필 | | |
| * | 보건소장 | 박진순 | 박진순 | | | |
| * | 농업기술센터장 | 박재현 | 박재현 | | | |
| * | 농수산유통사업단장 | 박남규 | 박남규 | | | |
|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상득 | 김상득 | | | |
| * | 국민해양안전관장 | 오경수 | 오경수 | | | |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례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이므로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3. 작성자

- 소 속: 기획홍보실
- 직 급: 행정7급
- 성 명: 박선우

기획홍보실장 정 기 문 (서명)

군민의 주인인 살기좋은 진도



진도군



수신 기획홍보실장

(경유)

제목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관련 : 기획홍보실-6002(2024.5.9.)호
2.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24.5.24.(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 가.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 값인 [통보 (개선)] 클릭
- 나.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 다.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4A전남진도032) 1부. 끝.

진 표 고



| | | | | | |
|------|--------------|---------------|--------------|------------|--------------------------|
| 주주권 | 발행일 | 기록창제일 | 제정일 | 기록창제일 | 25년 2024. 8. 16. 227일 |
| 발표지 | | | | | |
| 시행 | 기록창제일-2024 | 2024. 8. 16.1 | 집수 | 기록홍보실-6316 | 2024. 8. 16.1 |
| 주 소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 전화번호 | 061-640-0564 | 팩스번호 | 061-640-0564 | 홈페이지 | www.ark.go.kr |
| | | | | | www.ark.go.kr |

나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 | | |
|----------------------|---|---|-------------------|
| 관리번호 | 2024A전남전도032 | | |
| 정책명 | 전도군 시책일문제 운영 조례안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전도군 | |
| | 부서명 | 기획홍보실 | |
| | 담당자명 | 박선우 | 전화번호 061-540-3009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2024년 5월 9일 | | |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홍보실) | <p>○ 전도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주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살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함, 또한 이를 통해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p> | | |
|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p><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p> <p>○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성별영향평가 지표 3, 성별균형 참여에 해당함.</p> <p>○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 등 명칭 불문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판을 말함)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p> <p>○ 본 조례의 위원회 기능은 「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해당 조례의 위원회 구성요건을 살펴본 결과 <u>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균형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u>.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p> <p>○ 그러나 이것이 당장은 어려우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u>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것을 제안함</u>.</p> | | |
| | 구분 | 해당 내용 (개정법 명명) | 개선안 (법명 수정안) |
| 1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 |

| | |
|--|--|
| | <p>일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시책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①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p>일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시책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①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p> <p>②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
|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 <p>2024년 5월 24일 까지</p> |
|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05월 16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미림/061-540-1264)</p> <p>기획홍보실장 귀하</p> | |



진도군



수신 가족행복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심벌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1. 관련 : 가족행복과- 20327(2024. 5. 16.)호
2.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심벌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반영계획서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주무관: **백연우** 기획담당 **이원재** 기획홍보담당 전담 2024. 5. 21. **황기호**

참조자

시행: 기획홍보팀-850 (2024. 5. 21.) 접수

우 58215 **한라남도 진도군 진도를 향미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09 팩스번호 061-540-3048 / support@jindo.go.kr / 내국선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권(ON)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 | | | |
|------|------------------|----------|-------------------|
| 관리번호 | 2024A 전남전도032 | | |
| 정책명 | 전도군 시책일괄제 운영 조례안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전도군 | |
| | 부서명 | 기획홍보실 | |
| | 담당자명 | 박선우 | 전화번호 061-540-3009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 <p>○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성별영향평가 지표 3. 성별균형 참여에 해당함.</p> <p>○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 등 명칭 불문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함)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p> <p>○ 본 조례 제정안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u>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것을 제안함.</u></p> | <p>○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개선안 (법령 수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도군 시책일몰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할 하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td> </tr> </tbody> </table> | 구분 | 개선안 (법령 수정안) | 1 |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도군 시책일몰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할 하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
|---|--|----|-----------------|---|--|
| 구분 | 개선안 (법령 수정안) | | | | |
| 1 |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도군 시책일몰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할 하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p> <p>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 | | | |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다른 시책 등에 대하여
말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시책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군
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
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
회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024년 05월 20일

기획홍보실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5. 22. ~ 5. 31. (20일간)

- 붙임 1. 공고 경재문 1부.
2.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진도군



수신자: 주, 부, 도

주무관 박연우 기획팀장 이형호 기획홍보실장 진도군 2024. 5. 21. 발자문

참조자

시행 기획홍보실-223 (2024. 5. 21.) 접수

주 소번호: 진도남도·진도군·진도읍 청야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6-3000 팩스번호: 061-546-3040 / suroo21@ic184.kr / 외국인 공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권(06)

| | | | | | | | |
|------|----------|-----|------------|--------|-------|-----|--------|
| 문서번호 | 기획홍보실 60 | 담당자 | 기획팀장 | 기획홍보실장 | 부 군 수 | 군 수 | 결 재 |
| 보존기간 | 3년 | | | | | | |
| 공개여부 | 공개 | 박신우 | 이상호 | 리영환 | 최희성 | 김민석 | |
| 보고일자 | 2024.5.8 | 협조 | 법무의회팀장 윤정미 | | | | |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계획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이유

-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군의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3조)

- (목적) 진도군이 시행하는 시책 등이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 (정의) “시책 등”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 “일몰”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의미
- (적용범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

○ 일몰의 심의·결정(안 제4조)

-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

○ 일몰대상 시책(안 제5조)

-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진도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
-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및 의견청취(안 제7조~8조)

- 경미한 시책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가능

○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진행
- 진도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

○ 일몰 시책의 공개(안 제10조)

-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진도군 누리집에 공개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주관부서 의견

- 상기 “제정이유” 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 해당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24.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4. 6월

○ 의회 제출 및 의결 : 2024. 7월

○ 공포·시행 : 2024. 7월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73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일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상징물 사용 규정 부재로 인하여 민간의 상징물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하도록 함
 - 사용승인 사항 변경시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
-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
 -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경우, 군 차원의 농수축산물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상징물 사용승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상징물 사용승인 위반시 조치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24. 5. 22. ~ 6. 1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불입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7. 10.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u>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u></p> <p><u>①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u> <u>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u> <p><u>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u></p> |

<신 설>

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생략)

<신설>

제9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
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 번호 | 제목 | 신청자 | 심의요지 | 심의결과 |
|---------|------------------------|--------|--|------|
| 2024-51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 | ○ 개정이유 - 진도군 상징물 사용 규정 무효로 인하여 민간의 상징물 사용이 부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징물공 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승인 절차 및 범위 승인 위반시 조치사항 등 (안 제8조~제10조 등) | 영안의결 |

위와 같이 의결함
2024.

| 구분 | 직 | 위 | 성명 | 가(의) | 부(의) | 부(의)일 경우 사유 |
|-------|-----------|---|-----|------|------|-------------|
| 의장 | 군 | 수 | 김희수 | 김희수 | | |
| 부(의)장 | 부 | 수 | 김선주 | 김선주 | | |
| 위원 | 기획홍보실장 | | 정기문 | 정기문 | | |
| · | 연구정책실장 | | 박윤수 | 박윤수 | | |
| · | 안전생활지원과장 | | 김기형 | 김기형 | | |
| · | 총무과장 | | 이철민 | 이철민 | | |
| · | 세무회계과장 | | 김정숙 | | | |
| · | 민원분사과장 | | 백윤숙 | 백윤숙 | | |
| · | 수산자원과장 | | 박태종 | | | |
| · | 진도개축산과장 | | 권영복 | | | |
| · | 해양환경과장 | | 곽상규 | | | |
| · | 경제에너지과장 | | 이재권 | 이재권 | | |
| · | 주민복지과장 | | 이비예 | 이비예 | | |
| · | 가족행복과장 | | 조규상 | 조규상 | | |
| · | 관광과장 | | 최정자 | 최정자 | | |
| · | 문화예술체육과장 | | 김현관 | 김현관 | | |
| · | 건설과장 | | 오경수 | 오경수 | | |
| · | 도시개발과장 | | 박권석 | 박권석 | | |
| · | 환경수질과장 | | 한용철 | | | |
| · | 산림휴양과장 | | 장재필 | 장재필 | | |
| · | 보건소장 | | 이용복 | | | |
| · | 농업기술센터장 | | 김상득 | | | |
| · | 농수산물물사업소장 | | 고재근 | | | |
| · | 공원관리사업소장 | | 김홍근 | | | |
| · | 시설관리사업소장 | | 권영권 | | |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례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이므로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3. 작성자

- 소 속: 기획홍보실
- 직 급: 행정7급
- 성 명: 윤예원

기획홍보실장 정 기 문 (서명)
2022.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 | | | |
|---|---|----------|------|--------------|
| 관리번호 | 2024A전남진도033 | | | |
| 정책명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 |
| | 부서명 | 기획홍보실 | | |
| | 담당자명 | 고가람 | 전화번호 | 061-540-3008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2024년 5월 28일 | | | |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홍보실) | ○ 진도군 상징물 사용 규정 규제로 인하여 민간의 상징물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징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 | | |
|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 | |
|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 | |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 | |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 | | | |
| 2024년 06월 07일 | | | | |
| 진도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 | |
| (담당자/연락번호 : 박미림/061-540-1264) | | | | |
| 기획홍보실장 귀하 | | | |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I 개정이유

*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진도군 상징물 사용 규정 부재로 인하여 민간의 상징물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개정내용

- 상징물의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하도록 함
 - 사용승인 사항 변경시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
- 상징물 사용승인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
 -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경우, 군 차원의 농수축산물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상징물 사용승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상징물 사용승인 위반시 조치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

III 조례안

-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IV

향후 추진일정

-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20일 이상) : 2024. 5. ~ 6.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7.
- 군 의회 조례안 제출 : 2024. 9.
- 조례 공포 : 2024. 10.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74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진도군 관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운항지원금 지원(안 제3조 ~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나르미션 등의 선주에게 운항경비 지원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안 제5조)
 -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지원
 - 1년 이상 응급환자 구조 활동을 한 선주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 우수 119나르미션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 지원
- 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4. 5. 8. ~ 5. 2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사항 : 붙임(미첨부시 사유서)

9.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6. 24. 원안의결

10. 참고사항 : 없음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 나르미션 등"이란 진도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야간운항"이라 함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항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119 나르미션 등의 선주에 한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는 119 나르미션으로 지정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구조 활동을 한 선주에 대하여 별표3과 같이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 시 가입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1등급 우수 119나르미션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119 나르미션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

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

| 구 분 | 선박규모 | 선박종류 (기관) | km당 지급량 (ℓ) | ℓ 당 가격 산정기준 | 비 고 |
|------|--------|--------------|----------------|----------------------------------|--|
| 주간운항 | 1톤 이하 | 휘발유용 | 0.50 | 매월 발행된 한국 물가 정보지 적용 (왕복기준) | 119나르미션 재원 및 특성을 기초 로 km당 평균 연 료 소비량 산정 |
| | | 경유용 | 0.55 | | |
| | 1~5톤이하 | 휘발유용 | 1.11 | | |
| | | 경유용 | 1.48 | | |
| | 5톤 이상 | 휘발유용 | - | | |
| | | 경유용 | 2.22 | | |
| 야간운항 | 1톤 이하 | 휘발유용 | 1 | | |
| | | 경유용 | 1.10 | | |
| | 1~5톤이하 | 휘발유용 | 2.22 | | |
| | | 경유용 | 2.96 | | |
| | 5톤 이상 | 휘발유용 | - | | |
| | | 경유용 | 4.44 | | |

[별표 2]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 인 건 비 | | | | | | | | 비 고 (인건비 산정기준) |
|----------------|-----------|--------------|---------|--------------|---------|--------------|---------|--------------|--------------------------|
| | 가 군 | | 나 군 | | 다 군 | | 라 군 | | |
| | 대 상 지 역 | 소 요 시 간 (왕복) | 대 상 지 역 | 소 요 시 간 (왕복) | 대 상 지 역 | 소 요 시 간 (왕복) | 대 상 지 역 | 소 요 시 간 (왕복) | |
| 주간 운항 (1회당) | 전 도서 | 6시간 이내 | 없음 | 7시간 이내 | 없음 | 8시간 이내 | 없음 | 12시간 이내 | 정부고시 특별인부 임금 기준 적용 |
| 야간 운항 (1회당) | 주간 운항의 2배 | | | | | | | | |

※ 기타사항

- 소요시간(왕복)이 3시간 미만인 경우 3시간으로 계산 지급
-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 수행으로 특별인부 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

[별표 3]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등급 설정(제5조제2항 관련)

1) 등급 설정(4개 등급)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기 준 | 연 7회 이상 운항 | 연 5회 이상 7회 미만 | 연 1회 이상 5회 미만 | 실적 없음 |
| 지원비율 | 100% | 70% | 50% | 0% |

2) 등급 설정 기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9 나르미션 등의 관리 기관 (119나르미션 등의 지정 기관)에서 등급을 설정 후 진도군으로 등급 통보

[별지 제1호서식]

|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 | | | | |
|--|--|------------|--|-----|
| 신 청 인 | ① 상호(명칭) | | | |
| | ② 성 명 (대 표 자) | ③ 생년월일 | | |
| | | ④ 성 별 | |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⑥ 운항선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 박 명 : _____ ●선박규모 : _____ 톤 ●선박종류(기관) : _____ (회발유용, 경유용) | | | |
| ⑦ 운항구간 | _____ ~ _____ (km) | | | |
| ⑧ 운항일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_____ 시간) | | | |
| ※ 참고사항 기재 - 화재, 구조시 : 요청자 인적사항 등 - 구급시 : 이송 응급환자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 | ○○소방서 | | |
| | | ○○소방서장(직인) | | |
| 「진도군 119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
| 2024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_____ (인 또는 서명) | | | | |
| <h2 style="margin: 0;">진도군수 귀하</h2> | | |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1. 통장사본 1부. | | | | 없 음 |
| 2.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차인 경우 임차권 확인서류) 1부. | | | | |
| 3. 구급활동일지 사본 1부. | | | | |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호, 모두의 보호"



진도군



수신 안전생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4년 제15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등보

2024년 제15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4. 6. 24.)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제안번호 | 자 치 법 규 정 | 심 의 결 과 | 소 관 부 서 | 비 고 |
|---------|------------------------------|---------|---------|-----|
| 2024-48 |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문항지침에 관한 조례안 | 결 의 | 안전생활지원과 | |
| 2024-49 | 진도군 차차경찰 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결 의 | 안전생활지원과 | |

붙임 심의 의결서 2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주무관 **정진희** 보무비서관 **홍선미** 기획홍보실장 **정기훈** 인공 2024. 6. 24.

첨착자

시별 기획홍보실-7990 (2024. 6. 24.) 접수 안전생활지원과-51785 (2024. 6. 24.)

우-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활바골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01-540-3047 팩스번호 001-540-3088 / info@jindo.go.kr / 비공개(5)

※ 실용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 번호 | 제 목 | 신청자 | 심 의 요 지 | 심의결과 |
|---------|---------------------------------------|--------------|---|------|
| 2024-48 | 진도군 119 나트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전생활 지원과장 | ○제정이유 - 진도군 관내 도서지역 운항원자 미충을 위하여 운항을 지원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운항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지급기준 등 | 결의안 |

위와 같이 의결함
2024. 6. 24.

| 구 분 | 직 | 위 | 성 명 | 가(可) | 부(否) | 부(否)할 경우 사유 |
|-------|-----------------|---|-------|------|------|-------------|
| 의 장 | 군 | 수 | 김 희 수 | 김희수 | | |
| 부 의 장 | 부 군 | 수 | 우 흥 설 | | | |
| 위 원 | 기 회 홍 보 실 장 | | 정 기 문 | | | |
| * | 인 구 정 책 실 장 | | 허 수 철 | | | |
| *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 | - | | | |
| * | 총 무 과 장 | | 이 용 복 | 이용복 | | |
| * | 세 무 회 계 과 장 | | 박 정 현 | | | |
| * | 인 원 봉 사 과 장 | | 허 승 목 | 허승목 | | |
| * | 수 산 지 원 과 장 | | 박 태 종 | 박태종 | | |
| *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 | 강 정 화 | 강정화 | | |
| * | 해 알 활 만 과 장 | | 곽 상 규 | 곽상규 | | |
| *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 | 김 영 복 | | | |
| * | 주 인 복 지 과 장 | | 이 미 예 | 이미예 | | |
| * | 가 족 행 복 과 장 | | 김 기 형 | 김기형 | | |
| * | 관 광 과 장 | | 최 정 자 | 최정자 | | |
| * | 문화예술회관체육과장 | | 김 경 숙 | | | |
| * | 편 실 과 장 | | 박 제 현 | 박제현 | | |
| * | 도 시 개 발 과 장 | | 이 창 민 | 이창민 | | |
| * | 환경수질과장 | | 이 재 권 | 이재권 | | |
| * | 선 립 휴 양 과 장 | | 장 재 필 | 장재필 | | |
| * | 보 관 소 장 | | 박 전 순 | | | |
| * | 농업기술센터장 | | 박 계 전 | | | |
| * | 농수산물유통사업단장 | | 박 남 규 | | | |
| * | 시설관리사업소장 | | 김 상 목 | | | |
| * | 국민해양안전관장 | | 오 경 수 | | | |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119 나프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진도군 119 나프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조 례 명 : 진도군 119 나프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고기간 : 2024. 5. 8.(수) ~ 5. 28.(화) / 20일간
- 다. 예고방법 : 진도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라. 의견제출 :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안전정책팀

- 붙임 1. 공고관계문 1부.
2. 진도군 119 나프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진도군



수신처 노, 국, 도

| | | | | |
|--------|---------------------|--------------|--------------|---|
| 주무관 | 김민우 | 안전정책팀장 | 44703 | 안전생활지원과 진도 2024. 5. 8. 의정 사무실의 직책함 |
| 발신자 | | | | |
| 서형 | 안전생활지원과-44703 | (024) 91-811 | 합수 | |
| 주 홈페이지 | 진도남도 진도군 주소를 찾아요 24 | | | http://www.jindo.go.kr |
| 전화번호 | 911-501-0204 | 팩스번호 | 911-501-0206 | jin@jin0400.com / 024-911-501-0206 |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크라이버서 존(000)

“일상 속 삶이 있는 보훈, 오두의 보훈”



진도군



수신 안전생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119 나트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관련 : 안전생활지원과-52187(2024.5.29.)호
2. 「진도군 119 나트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24.6.19.(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 가. 나의메이저> 나의합일> 성별영향평가대기> 나의과제-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같은 [통보 (개선)] 클릭
- 나.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 다.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2024A전남검도035 | | | | | | | | | | |
|---|--|---|-------------------|------|--------------------|---------------|------|---|---|---|--|
| 질 책 명 |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순찰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 | | | | | | | |
| | 부서명 | 안전생활지원과 | | | | | | | | | |
| | 담당자명 | 김현주 | 전화번호 061-540-0864 | | | | | | | | |
| 성별영향평가지 제출날짜 | 2024년 6월 3일 | | | | | | | | | | |
|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생활지원과) | <p>○ 진도군 관내 도서지역 순찰원기 이송을 위하여 응급응답하는 민간선박에 순찰지원금을 지원하여 수원의 평생을 보호하기 위함.</p> <p><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p> <p>○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션 등의 순찰지원금 지급신청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4. 성별동계에 해당함.</p> <p>○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인적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성별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표 구분한 통계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p> <p>○ 이에 별지서식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성별)'로 수정하여 성별 통계를 생산하기 바람.</p> | | | | | | | | | | |
|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40%;">해당 내용 (특이사항 없음)</th> <th style="width: 35%;">개요 (개선 사항)</th> <th style="width: 20%;">검토사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션 등의 순찰지원금 지급신청서 성별통계 미생산</td> <td>[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션 등의 순찰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단계 생년월일을 성별월일(성별)로 수정하여 성별 통계 구분 해당</td> <td></td> </tr> </tbody> </table> | | | 구분 | 해당 내용 (특이사항 없음) | 개요 (개선 사항) | 검토사유 | 1 | [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션 등의 순찰지원금 지급신청서 성별통계 미생산 | [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션 등의 순찰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단계 생년월일을 성별월일(성별)로 수정하여 성별 통계 구분 해당 | |
| | 구분 | 해당 내용 (특이사항 없음) | 개요 (개선 사항) | 검토사유 | | | | | | | |
| 1 | [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션 등의 순찰지원금 지급신청서 성별통계 미생산 | [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션 등의 순찰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단계 생년월일을 성별월일(성별)로 수정하여 성별 통계 구분 해당 | | | | | | | | | |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24년 6월 19일 까지 | | | | | | | | | | |
|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지에 대한 검토의견은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06월 07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전화번호 : 박미림/061-540-1264)</p>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생활지원과장 귀하</p> | | | | | | | | | | |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 | | | | |
|-----------------|---|--|--|--------------|
| 관리번호 | 2024A전남전도035 | | | |
| 장 계 명 | 전도문 119 나르미선 동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전도군 | | |
| | 부서명 | 안전생활지원과 | | |
| | 담당자명 | 김민주 | 전화번호 | 001-540-6864 |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 | | | |
| 1 |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119 나르미선 동회 운영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생년월일(성별)을 추가하여 성별 통계 작성 요청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 「전도문 119 나르미선 동회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의 생년월일(성별) 추가하여 조례 제정 | |
| 2024년 06월 11일 | | | | |
| 안전생활지원과장 | | | | |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 | | |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나르미션 운항지원금 소요액 : 연 2,000,000원

3. 작성자

-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행정7급 김민주

안전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재현 (서명)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 문서번호 | 안전생활지원과 2024.5.9. | 담당자 | 협장 | 과장 | 부 군수 | 군수 | 결 재 |
|------|----------------------|-----|-----|-----|------|-----|--------|
| 보존기간 | 준영구 | 김민석 | 박재영 | 박재형 | 이종성 | 김민석 | |
| 공개여부 | 공개 | | | | | | |
| 시행일자 | 2024. 5. 9. | | | | | | |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

Jindo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안)

I 현 황

○ 도서지역 구급 현황(최근 2년간)

| 구분 | 계 | 상도 | 하도 | 가사도 | 관매도 | 관사도 | 나도 | 늘속도 | 죽함도 | 기타 |
|-----|-----|----|-----|-----|-----|-----|----|-----|-----|----|
| 합계 | 266 | 56 | 186 | 2 | 2 | 1 | 6 | 3 | 3 | 7 |
| '22 | 135 | 25 | 103 | 1 | | | 4 | | | 2 |
| '23 | 131 | 31 | 83 | 1 | 2 | 1 | 2 | 3 | 3 | 5 |

○ 나르미션 지정현황: 10척(하조도 7, 대마도 1, 죽함도 2)

○ 타시군 조례제정 현황: 8개 지자체

- 전남(4개 시·군): 여수시,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 충남(2개 시): 당진시, 보령시
- 경남(2개 시): 사천시, 통영시

※ 예산현황: 여수 5,000천원, 신안 3,000천원, 완도 14,000천원

II 제정 필요성

-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민간선박을 대상으로 전남소방본부에서 지정한 우리군 119 나르미션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지원이 필요

Ⅲ 제정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운항지원금 지원(안 제3조-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나르미션 등의 선주에게 운항경비 지원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안 제5조)
 -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지원
 - 1년 이상 응급환자 구조 활동을 한 선주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
 - 우수 119나르미션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지원
- 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안 제6조)

Ⅳ 향후 계획

- 2024. 5. : 입법예고
- 2024.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4. 6. : 의회 상정

[붙임] 1. 조례안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75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관내 유인도서 중 경찰관 미배치 도서의 범죄·테러·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 등 대응력 부재
- 해경 및 유관기관 협조 관용선 이용시 사전 조율 등 시간지체로 즉시 출동 한계 발생에 따른 민간선박 이용 필요

2. 주요내용

- 지원사업(안 제6조)
 -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진도경찰 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 운항 지원금 지원근거 마련
- 자치경찰실무협의회(안 제8조)
 - 실무협의회 정례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5. 8. ~ 5. 2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민간선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제4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4. (생략)</p> <p><신설></p> <p>5. (생략)</p> <p><신설></p> | <p>제6조(지원사업) ①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u>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민간선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진도군 119 나르미션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
| <p>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 ③ (생략)</p> <p>④ 실무협의회는 <u>분기별</u>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p> | <p>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반기별</u> -----</p> <p>-----</p> <p>-----.</p> |

"일상 속 살아 있는 문화, 모두가 보듯"



진도군



수신 : 안전생활지원과장
(공무)

제목 : 2024년 제16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4년 제15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4. 6. 24)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근 아 대 근

| 의안번호 | 처 리 법 규 형 | 결 의 결 과 | 소 관 부 서 | 비 고 |
|---------|--------------------------------|---------|---------|-----|
| 2024-48 | 진도군 119 내선미선 등의 문장(의견)에 관한 조례안 | 합 의 결 과 | 안전생활지원과 | |
| 2024-49 | 진도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합 의 결 과 | 안전생활지원과 | |

붙임 : 1. 의결서 2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주무관

박정희

발주요청처장

윤선미

구호홍보담당

김지현

참조자

이행 기획홍보담당-7992

(2024. 6. 24)

합수 안전생활지원과-41785

(2024. 6. 24)

주 83915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중앙로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81-640-3247

팩스번호 081-640-3049

/ wj8945@jindo.go.kr

(리뷰가)5

본 글을 작성한 기자(홍보)이름, 연락처(이메일)는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 번호 | 제목 | 신청자 | 심의요지 | 심의결과 |
|-----------------------|----------------------------------|--------------|--|------|
| 2024- ^제 19 | 진도군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안전생활 지원과장 | ○개정이유 - 관내 경찰관 비례치 도서의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증원을 신속하게 할함에 따라 진도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존칭하는 민간선박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주요내용 - 민간선박 운항지원금 지원근거 마련 및 실무협의회 정례회의 분기별 1회에서 반기 1회 선사로 개정 | 결의안건 |

위와 같이 의결함

2024. 6. 24.

| 구 | 분 | 과 | 위 | 성 | 명 | 가(의) | 부(의) | 위원장 | 정수 | 장수 |
|---|---|----|---|---|---|------|------|-----|----|----|
| 의 | 장 | 군 | 수 | 김 | 희 | 수 | | | | |
| 부 | 의 | 장 | 부 | 우 | 홍 | 철 | | | | |
| 위 | 원 | 기 | 회 | 홍 | 보 | 심 | | | | |
| · | | 인 | 구 | 정 | 태 | 심 | | | | |
| · | | 안 | 전 | 생 | 활 | 지 | | | | |
| · | | 총 | 무 | 과 | 장 | 이 | | | | |
| · | | 세 | 무 | 회 | 계 | 과 | | | | |
| · | | 민 | 원 | 발 | 사 | 과 | | | | |
| · | | 수 | 산 | 지 | 원 | 과 | | | | |
| · | | 진 | 도 | 계 | 축 | 산 | | | | |
| · | | 태 | 양 | 항 | 만 | 과 | | | | |
| · | | 경 | 제 | 에 | 너 | 지 | | | | |
| · | | 주 | 민 | 복 | 지 | 과 | | | | |
| · | | 가 | 족 | 행 | 복 | 과 | | | | |
| · | | 관 | 광 | 과 | 장 | 과 | | | | |
| · | | 문 | 화 | 예 | 술 | 재 | | | | |
| · | | 건 | 선 | 과 | 장 | 과 | | | | |
| · | | 도 | 시 | 개 | 발 | 과 | | | | |
| · | | 환경 | 수 | 원 | 과 | 장 | | | | |
| · | | 산 | 림 | 휴 | 양 | 과 | | | | |
| · | | 보 | 건 | 소 | 장 | 과 | | | | |
| · | | 농 | 업 | 기 | 술 | 센터 | | | | |
| · | | 농 | 수 | 관 | 유 | 물 | | | | |
| · | | 시 | 정 | 관 | 리 | 사 | | | | |
| · | | 국 | 민 | 해 | 안 | 안 | | | | |



진도군



수신 | 수신자 |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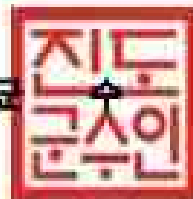
제목 |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읍무과장께서는 불일-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 면장께서는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조 세 일 :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나. 예고기간 : 2024. 5. 6.(수) - 5. 28.(화) / 20일간
- 다. 예고방법 : 진도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라. 의견제출 :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안전정책팀

-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 2.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진도군



주청하 도, 부, 도

| | | | | | |
|-----|------|-----|-----|-----|-----|
| 주청하 | 진도군청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 주청하 | 진도군청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 주청하 | 진도군청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 주청하 | 진도군청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 주청하 | 진도군청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주청하 |

내 실용 시간은 개항일로 보수, 유망하시 원합니다

“알려 줄 삶에 주는 보훈, 모두의 보훈”



진도군



수신 안전생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관련 : 안전생활지원과-52186(2024.5.29.)호
2.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용인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 주무관 | 부서명 | 사무처세무팀 | 부서명 | 사무처세무팀 | 연락처 |
|-----------------------------|---------------------|--|-----|---|------------|
| 김소자 | | | | | 전화 204-517 |
| 서명 | 사무총장(과) 2284 | (204-517) | 김우 | 안전생활지원과-52186 | (204-517) |
| 우 58815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청어길 25 | | | http://www.jindo.go.kr | |
| 전화번호 200-90-1284 | 팩스번호 201-940-0184 | 100@jindo.kr | | (내국선 공개) | |
| 나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존중! | | |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 | | | |
|---|---|----------|------|--------------|
| 관리번호 | 2024A전남진도034 | | | |
| 정책명 |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 |
| | 부서명 | 안전생활지원과 | | |
| | 담당자명 | 김민주 | 전화번호 | 061-540-6864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2024년 6월 3일 | | | |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생활지원과) | ○ 관내 유인도서 중 경찰관 미배치 도서의 범죄테러재난 등 발생 시 긴급출동 등 대응력 부재 및 출동 한계 발생에 따라 진도 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석박에 대해 지원하기 위함. | | | |
|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 | | |
| |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 | |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 | |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 | | | |
| 2024년 06월 07일 | | | | |
| 진도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 | |
| (담당자/연락번호 : 박미림/061-540-1264) | | | | |
| 안전생활지원과장 귀하 | | | | |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자치경찰 운항지원금 소요액 : 연 2,000,000원

3. 작성자

-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행정7급 김민주

안전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재현
박재현 (서명)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 | | | | | | | |
|------|--------------------|-----|-------------|-------------|-----|-----|--------|
| 문서번호 | 안전생활지원과 444-311 | 담당자 | 팀장 | 과장 | 부군수 | 군수 | 검 제 |
| 보존기간 | 존영구 | 김민주 | 백혜경 | 박재현 | 이동섭 | 이희승 | |
| 공개여부 | 공개 | | | | | | |
| 시행일자 | 2024. 5. 1 | 협조 | 업무의뢰담당(윤안)이 | 기획홍보담당(이희승) | | | |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Jindo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I 현 황

□ 유인도서 경찰관 배치현황: 44개 도서(배치 2, 미배치 42)

※ 배치도서: 상하조도, 관매도

□ 경찰관 미배치도서 112출동 현황('23. 3. - '24. 3.)

| 도서 | 계 | 가사도 | 구자도 | 모도 | 저도 | 동거차 | 대마도 | 기타 |
|-------|----|-----|-----|----|----|-----|-----|----|
| 합계 | 43 | 14 | 9 | 2 | 2 | 5 | 6 | 5 |
| 상담안내* | 39 | 14 | 6 | 2 | 2 | 5 | 5 | 5 |
| 현장출동 | 4 | | 3 | | | | 1 | |

* 상담안내: 긴급상황시 출동할 수 있는 선박의 부재로 현장 출동하지 못하여 상담으로 대체한 건수

※ 경찰서 민간선박 지원 지자체: 완도군

II 개정 필요성

□ 관내 유인도서 중 경찰관 미배치 도서의 범외테러·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등 대응력 부재

□ 해경 및 유관기관 협조 관용선 이용시 사권 조율 등 시간지체로 즉시 출동 한계 발생에 따라 민간선박 이용 필요

Ⅲ 개정 내용

□ 지원사업(안 제6조)

-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진도경찰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 운항 지원금 지원근거 마련

□ 자치경찰실무협의회(안 제8조)

- 실무협의회 정례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Ⅲ 향후 계획

□ 2024. 5. : 입법예고

□ 2024. 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4. 6. : 의회 상정

[붙임] 1. 개정문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태리·재난 등 공공안전장시 유지를 위해 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영하는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재산 및 손실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민간선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진도군 119 나르바신 등비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제4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생략)</p> <p><신설></p> | <p>제6조(지원사업) ①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재경 및 손실 지원</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민간선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진도군 119 나르기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
| <p>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 ③ (생략)</p> <p>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경배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p> | <p>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분기별 -----</p> <p>-----</p> <p>-----</p>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76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상품권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할인비율, 구매한도 및 정책발행 상품권 환전한도의 예외 규정 추가
-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정책발행 상품권 환전한도의 예외규정 추가(안 제7조)
- 상품권 할인비율 및 구매한도 예외규정 추가(안 제8조)
-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 추가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6. 19. ~ 7. 9.(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7. 10. 원안의결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가맹점주가 환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최대 5천만원의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담당공무원에게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책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환전한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을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대한 예산 범위 내의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및 대금의 지급) ① ~ ③ (생략)</p> <p>④ <u>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주가 환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최대 5천만원의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담당공무원에게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u></p> <p>⑤ (생략)</p> <p>제8조(할인판매 및 구매한도) ① (생략)</p> <p>② <u>상품권 할인가매는 월 7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월 100만원까지 할인가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u></p> <p>③·④ (생략)</p> <p><u><신설></u></p> | <p>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및 대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가맹점주가 환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최대 5천만원의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담당공무원에게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책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환전한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할인판매 및 구매한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단서 삭제></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u></p> |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활성화 조치)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제11조(이용 활성화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대한 예산 범위 내의 인센티브 지급 등 -----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사결과

| 법호 | 제 목 | 신청자 | 심 사 요 지 | 심사결과 |
|---------|------------------------|----------|---|------|
| 2024-12 | 관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경제에너지과 장 | ○ 개정이유 - 관도 아리랑 상품권 이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인센티브 지급 등을 위한 행정의 과감적 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정책발매 상품권 환전한도의 예외규정 추가 - 상품권 할인비율 및 구매한도 예외규정 추가 - 판매대행업, 가맹점,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 추가 | 결안의결 |

위와 같이 의결함.

2024. 7. 10.

| 구 분 | 직 | 위 | 성 명 | 가(可) | 부(否) | 부(否)일 경우 사유 |
|------|-----------|---|-------|------|------|-------------|
| 위원장 | 군 | 수 | 김 회 수 | 결안의결 | | |
| 부위원장 | 부 | 군 | 김 선 주 | 결안의결 | | |
| 위원 | 기획홍보실장 | | 정 기 문 | 결안의결 | | |
| ○ | 인구정책실장 | | 박 윤 수 | 결안의결 | | |
| ○ | 안전생활지원과장 | | 김 기 형 | 결안의결 | | |
| ○ | 총무과장 | | 이 창 민 | 결안의결 | | |
| ○ | 세무회계과장 | | 김 정 숙 | 결안의결 | | |
| ○ | 민원봉사과장 | | 백 윤 숙 | 결안의결 | | |
| ○ | 수산지원과장 | | 박 태 종 | | | |
| ○ | 진도개축산과장 | | 김 영 복 | | | |
| ○ | 해양항만과장 | | 라 상 규 | | | |
| ○ | 경제에너지과장 | | 이 재 권 | 결안의결 | | |
| ○ | 주민복지과장 | | 이 미 예 | 결안의결 | | |
| ○ | 가족행복과장 | | 조 규 상 | 결안의결 | | |
| ○ | 관광과장 | | 최 정 자 | 결안의결 | | |
| ○ | 문화예술과장 | | 김 현 관 | | | |
| ○ | 건설과장 | | 오 경 수 | | | |
| ○ | 도시개발과장 | | 박 건 석 | 결안의결 | | |
| ○ | 환경수질과장 | | 한 용 현 | 결안의결 | | |
| ○ | 산림휴양과장 | | 장 재 필 | 결안의결 | | |
| ○ | 보건소장 | | 이 용 복 | | | |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 김 상 득 | | | |
| ○ | 농수산유통사업소장 | | 고 재 근 | | | |
| ○ | 공원관리사업소장 | | 김 흥 근 | | | |
| ○ | 스포츠산업사업소장 | | 박 상 윤 | 결안의결 | | |
| ○ | 시설관리사업소장 | | 권 영 진 | | | |

아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3. 작성자

- 부서: 경제에너지과 직급: 행정8급 이름: 김보화

경제에너지과장 이 제 권 (서명) 

“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보람”



진도군



수신 : 경제에너지과장
(결유)

제목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심의영향평가 결과 홍보

1. 관련 : 경제에너지과-24068(2024.6.14.)호
2.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심의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홍보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 통보서(2024진남진도036)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 주도자 | 부호 | 가계영향평가 제시일 | 가계영향평가 제시일 | 진도 2024. 6. 14. 호 결기일 |
|------------------------------------|--------------------|----------------|-----------------|---------------------------|
| 발주자 | | | | |
| 서명 | 가계영향평가-24068 | (2024. 6. 14.) | 진수 경제에너지과-24115 | (2024. 6. 14.) |
| 주 : 30015 | 경제에너지과 진도군 청도를 통하여 | | | ☎ http://www.jindo.go.kr |
| 전화번호 | 801-540-1384 | 팩스번호 | 801-540-2644 | ☎ 1522@jindo.kr / 4대국민 공개 |
|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5771444(시) 권(06) | |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 | | | |
|---|---|----------|------|--------------|
| 관리번호 | 2024A 전남진도036 | | | |
| 정책명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 |
| | 부서명 | 경제에너지과 | | |
| | 담당자명 | 김은주 | 전화번호 | 061-540-6422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2024년 6월 14일 | | | |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에너지과) | ○ 상품권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할인비율, 구매한도, 정책발행 상품권 환전한도의 예외 규정 추가, 판매대행점/가맹점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 | |
|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 | | |
|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 | |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 | |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 | | | |
| 2024년 06월 18일 | | | | |
| 진도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 | |
| (담당자/연락번호 : 박미림/061-540-1264) | | | | |
| 경제에너지과장 귀하 | | | | |

"보통 속 살아 있는 보통, 보우의 보통"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읍면파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6. 19. ~ 7. 6.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수신처 노·로·도

| | | | | | |
|------|--------------|--------------------|---------------|---|-------------------------------|
| 주우선 | 김관주 | 상무홍보실장 신 교백 | 지역과제담당 김민재 | 대일 2024. 6. 19. 관하여 | 광학에너지사업 장 |
| 참조처 | | | | | |
| 이월 | 광학에너지사업-2507 | (2024. 6. 19.) | 전수 | 광학에너지사업-2508 | (2024. 6. 19.) |
| 1부 | 58915 | 진도아리랑진도군 진도를 알려줄 때 | | / http://www.jindo.go.kr | |
| 전화번호 | 20-545-6422 | 팩스번호 20-545-5446 | | / kydpy@jindo.go.kr | / 대국민 공개 |
| | | | | | 나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존(ON) |

국민이 주인! 살가운 **진도**

| | |
|------|---------------|
| 등록번호 | 경제에너지과-2444 |
| 보존기간 | 5년 |
| 발재일자 | 2024. 06 / 4. |
| 공개여부 | 비공개 |

| 담당자 | 상권활성화 팀 장 | 경제에너지 과 과장 | 부과 수 | 군 수 |
|-----|-------------------|---------------|-------------------|-----|
| 검약 | 박지현 | 김영후 | 이홍섭 | 김민수 |
| 합 조 | 범우의회팀장 윤상익 | | 기획홍보실장 김영진 |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Jindo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 이유

- 상품권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할인비율, 구매한도 및 정책발행 상품권 환전한도의 예외 규정 추가
-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정책발행 상품권 환전한도의 예외규정 추가(안 제7조)
- 상품권 할인비율 및 구매한도 예외규정 추가(안 제8조)
-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 추가(안 제11조)

3 개정 조례 안

- 붙임 1

4 향후 추진일정

- 2024년 6월 : 입법예고
- 2024년 7월 : 조례규칙심의회
- 2024년 7월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4-77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도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선택예방접종 종류(안 제1조~제2조)
 - (목적) 진도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
 - (선택예방접종 종류)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기관(안 제3조~제4조)
 - (지원대상)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인플루엔자 전 군민, 대상포진 50세 이상 사람
 - (예방접종 실시기관) 진도군보건소·지소·진료소
- 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안 제5조)
 - 인적사항 확인부터 예방접종까지 과정 명시
- 비용지원, 환수, 준용(안 제6조~제8조)
 - (비용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 (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에 따름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4. 6. 19. ~ 7. 9.(20일간) / 제출의견 있음.

○ 검토 결과 첨부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4. 7. 10.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 전 군민
 2. 대상포진 : 50세 이상 사람
- 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진도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6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택예방접종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 | | | |
|---|--|---|--------|--|
| 신청인 (접종대상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보호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 <input type="checkbox"/> 대상포진 <input type="checkbox"/> 그 외 감염병() | | | |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 | | | |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아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 |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이 건 업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날인) | | | | |
| 진도군수 귀하 | | | | |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사결과

| 번호 | 제 목 | 신청자 | 심 사 요 지 | 심사결과 |
|---------|-----------------------|----------|--|--------|
| 2024-53 | 진도군 선대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감염병관리과 장 | ○ 제정이유 - 진도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 ○ 주요내용 - 선대예방접종에 관한 전담 사항 | 승인(의결) |

위와 같이 의결함.

2024. 7. .

| 구 분 | 직 | 위 | 성 명 | 가(可) | 부(否) | 부(否)일 경우 사유 |
|------|-----------|---|-------|------|------|-------------|
| 위원장 | 군 | 수 | 김 회 수 | 김회수 | | |
| 부위원장 | 부 군 | 수 | 김 선 주 | 김선주 | | |
| 위원 | 기획홍보실장 | | 정 기 문 | 정기문 | | |
| ~ | 인구정책실장 | | 박 윤 수 | 박윤수 | | |
| ~ | 안전생활지원과장 | | 김 기 형 | 김기형 | | |
| ~ | 총무과장 | | 이 창 민 | 이창민 | | |
| ~ | 세무회계과장 | | 김 정 숙 | 김정숙 | | |
| ~ | 민원봉사과장 | | 백 윤 숙 | 백윤숙 | | |
| ~ | 수산지원과장 | | 박 태 종 | 박태종 | | |
| ~ | 진도개축산과장 | | 김 영 복 | | | |
| ~ | 해양항만과장 | | 파 상 규 | | | |
| ~ | 경제에너지과장 | | 이 재 권 | 이재권 | | |
| ~ | 주민복지과장 | | 이 비 예 | 이비예 | | |
| ~ | 가족행복과장 | | 조 규 상 | 조규상 | | |
| ~ | 관광과장 | | 최 정 자 | 최정자 | | |
| ~ | 문화예술체육과장 | | 김 현 판 | 김현판 | | |
| ~ | 건설과장 | | 오 경 수 | 오경수 | | |
| ~ | 도시개발과장 | | 박 진 석 | 박진석 | | |
| ~ | 환경수질과장 | | 한 용 철 | 한용철 | | |
| ~ | 산림휴양과장 | | 장 재 필 | 장재필 | | |
| ~ | 보건소장 | | 이 용 복 | 이용복 | | |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 김 상 득 | | | |
| ~ | 농수산유통사업소장 | | 고 재 근 | | | |
| ~ | 공원관리사업소장 | | 김 흥 근 | | | |
| ~ | 스포츠산업사업소장 | | 박 상 율 | | | |
| ~ | 시설관리사업소장 | | 권 영 진 | | | |



진도군



수신 의신면 수송길 3 일장호

(경유)

제목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 안내

1.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의견서 검토 결과

| 조례안 내용 | 의견 | 결과 |
|--|---|----|
|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제1호 1. 인플루엔자 : 14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수정 요청 14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전 군민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 반영 |

끝

진도군



행정사무장 송수진 | 김병남 | 진도군청 2024. 7. 10. | 10101

참조자

시행: 보건소-18872 | (2024. 7. 10.) | 접수

주소: 58522 | 진도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진도군보건소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10-140-8047 | 팩스번호: 010-940-9509 | 112029@korea.kr | 비공개(1)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권(09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임광호
- 주 소 : 진도군 의산면 수품길 3
- 전 화 번 호 : 010-5022-1636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제1호 1. 인플루엔자 : 14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수정 요청 14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전 군민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즉시 파기함.
3.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7월 9일

제공사 성명 임 광 호 (임광호)

| | |
|----|-------------------|
| 접수 | (2024. 7. 9. :) |
|----|-------------------|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5년간(2024년-2028년)
- 사 업 비 : 978,550천원
 - 독감(인플루엔자) : 4,803명 × 10,000원 × 5개년
 - 대상포진 : 1,846명 × 80,000원 × 5개년
- 재원부담 : 군비100%
- 내 용 : 예방접종 지원

| 구 분 | 독 감 | 대상포진 | 비 고 |
|-----|---|---|----------|
| 대상자 | 4,803명 <small>(14~64세 인구수 30%)</small> | 1,846명 <small>(50세 이상 인구수 10%)</small> | 24.5명 기준 |
| 구입가 | 10,000원 | 80,000원 | |
| 계 | 48,030,000원 | 147,680,000원 | |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4년) | 2차년도 (2025년) | 3차년도 (2026년) | 4차년도 (2027년) | 5차년도 (2028년) | 계 |
|--------------------|-----------------|-----------------|-----------------|-----------------|-----------------|---------|
| 세 출 | 195,710 | 195,710 | 195,710 | 195,710 | 195,710 | 978,550 |
| 예방접종 구입비 (독감) | 48,030 | 48,030 | 48,030 | 48,030 | 48,030 | 240,150 |
| 예방접종 구입비 (대상포진) | 147,680 | 147,680 | 147,680 | 147,680 | 147,680 | 738,400 |

3.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하경찬 (인)

"청년 즉, 살아 있는 모험, 조국의 모험"



진도군



수신 진도군보건소장
(경유)

제목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관련 : 보건소-16071(2024.6.14.)호
2.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 의견 통보서(2024진남진도037)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 | | | | | | | |
|----------------------------------|---------------------|--|------------|--|----------------|-----------|-----------|
| 주무관 | 박기현 | 기획정책담당 | 박기현 | 기획정책담당 | 김우 | 건강증진.오.영 | 김우 |
| 주소지 | | | | | | | |
| 서명 | 기획정책과-2484 | (2024. 6. 14.) | 김우 | 보건소-16048 | (2024. 6. 14.) | | |
| 우 10010 | 진도남도 진도군 진도읍 중앙로 20 | | | / http://www.jindo.go.kr | | | |
| 전화번호 061-345-1324 | 팩스번호 061-345-0324 | / jeo1003@jindo.go.kr | | / jeo1003@jindo.go.kr | | / 대표번호 공개 | |
| ※ 성별 차이는 개인정보 보호, 조류(20)에서 결(20) | | | | |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 | | |
|---|--|----------|-------------------|
| 관리번호 | 2024A 전남진도037 | | |
| 정책명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 |
| 소관부서 | 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
| | 부서명 | 보건소 | |
| | 담당자명 | 김나영 | 전화번호 061-540-6042 |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2024년 6월 14일 | | |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소)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 | | |
|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 |
|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 |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 |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 | | |
| 2024년 06월 19일 진도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미림/061-540-1264) | | | |
| 보건소장 귀하 | | | |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나.
2. 기획홍보담당 및 읍무과장께서는 붙임의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안장에서는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기 영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6. 19.(수) ~ 7. 9.(화) / 20일간
- 예고방법 : 진도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진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붙임 1. 공고장제 1부.

2.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부. 끝.

진도군



수신자 진도군수

| | | | | | | | | | | | | | |
|---------------------------------|------------------------|---------|-----------|--------|----------------|---------|-----------|------|--------------|------|--------------|------|------------------------|
| 주무관 | 김진호 | 담당부서/직급 | 보건행정과/주무관 | 담당자/직급 | 이영준/주무관 | 담당부서/직급 | 보건행정과/주무관 | 전화번호 | 061-540-0000 | 팩스번호 | 061-540-0000 | 홈페이지 | http://www.jindo.go.kr |
| 발신자 | | 서명 | 보건소-0000 | | [2024. 6. 19.] | 협수 | | | | | | | |
| 주: 061-540-0000 | 전자우편: 진도군수@jindo.go.kr | 진도군 보건소 | | | | | | | | | | | |
| 전화번호: 061-540-0000 | 팩스번호: 061-540-0000 | | | | | | | | | | | | (해독할 공백) |
| ※ '실질' 지킴은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등(OU) | | | | | | | | | | | | | |

국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 | | | | | | | | |
|------|----------|-----|-------------|-------------|------------|-----|-----|----|
| 문서번호 | 보건소 | 주무관 | 감양관리 팀 장 | 보건행정 과 장 | 보건소장 | 부군수 | 군수 | 결재 |
| 보통기간 | 10년 | 김나경 | 주유지 | 김미찬 | 박진호 | 유홍영 | 김희숙 | |
| 발행일자 | 2024. 6. | | | | | | | |
| 공개구분 | 공 개 | 협조 | 법무의뢰담당 문선미 | | 기획홍보실장 김영민 | | | |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 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

2 주요 내용

- 목적, 선택예방접종 종류(안 제1~2조)
- 지원 대상, 예방접종 실시기관(안 제3~4조)
- 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안 제5조)
- 비용지원, 환수, 준용(안 제6~8조)

3 조 례 안

- 붙임 1

4 향후 추진일정

- 2024년 6월 : 입법예고
- 2024년 7월 : 조례규칙심의회
- 2024년 7월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 |
|----------|---------|
| 의안 번호 | 2024-78 |
|----------|---------|

제출년월일 : 2024년 7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코자 함.

□ 주요골자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 구분 | 경정 (A) | 기정 (B) | 증감액 (A-B) | |
|------|-------------|-------------|--------------|-------|
| | | | | % |
| 합계 | 581,334,206 | 515,783,887 | 65,550,319 | 12.7 |
| 일반회계 | 571,651,266 | 506,100,090 | 65,551,176 | 13 |
| 특별회계 | 9,682,940 | 9,683,797 | △857 | △0.01 |

□ 의안내용 : 첨부

【첨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조서

□ 세 입

(단위: 천원)

| 회 계 별 | 요 구 내 역 | | | | 심의결과 증 감 액 | 비 고 |
|-------|-------------|-------------|------------|-------|---------------|-----|
| | 경 정 액 | 기 정 액 | 증 감 액 | % | | |
| 합 계 | 581,334,206 | 515,783,887 | 65,550,319 | 12.7 | - | |
| 일반회계 | 571,651,266 | 506,100,090 | 65,551,176 | 13 | - | |
| 특별회계 | 9,682,940 | 9,683,797 | △857 | △0.01 | - | |

□ 세 출

(단위: 천원)

| 회 계 별 | 요 구 내 역 | | | 심 의 결 과 | | 비 고 |
|--------------------|-------------|-------------|------------|---------|------------|-----|
| | 경 정 액 | 기 정 액 | 증 감 액 | 증감액 | 예비비 계상액 | |
| 합 계 | 581,334,206 | 515,783,887 | 65,550,319 | - | - | |
| 일 반 회 계 | 571,651,266 | 506,100,090 | 65,551,176 | - | - | |
| 특 별 회 계 | 9,682,940 | 9,683,797 | △857 | - | - | |
| 소 계 | 9,682,940 | 9,683,797 | △857 | - | - | |
| 상 수 도 | 8,393,263 | 8,393,263 | - | - | - | |
| 의료급여기금 | 721,739 | 686,334 | 35,405 | - | - | |
| 자 활 기 금 | 534,594 | 603,000 | △68,406 | - | - | |
|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 27,973 | 1,200 | 26,773 | - | - | |
| 주 택 사 업 | 5,256 | - | 5,256 | - | - | |
| 간 척 사 업 | 110 | - | 110 | - | - | |
|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 5 | - | 5 | - | - | |

□ 기금회계 (수입)

(단위: 천원)

| 회 계 별 | 요 구 내 역 | | | | 심의결과 증 감 액 | 비 고 |
|-------|------------|------------|-----------|-----|---------------|-----|
| | 경 정 액 | 기 정 액 | 증 감 액 | % | | |
| 기금회계 | 66,781,764 | 64,779,877 | 2,001,887 | 3.1 | - | |

□ 기금회계 (지출)

(단위: 천원)

| 회 계 별 | 요 구 내 역 | | | 심 의 결 과 | | 비 고 |
|--------------------------------|------------|------------|-----------|---------|------------|-----|
| | 경 정 액 | 기 정 액 | 증 감 액 | 증감액 | 예비비 계상액 | |
| 합 계 | 66,781,764 | 64,779,877 | 2,001,887 | - | - | |
| 농 수 산 물 가 격 안 정 | 9,284,100 | 8,561,133 | 722,967 | - | - | |
| 폐기물 처리시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 70,484 | 70,456 | 28 | - | - | |
| 재 활 용 품 판 매 대 금 관 리 | 213,033 | 213,033 | - | - | - | |
| 재 난 관 리 | 2,782,201 | 2,382,453 | 399,748 | - | - | |
| 식 품 진 흥 | 64,077 | 63,062 | 1,015 | - | - | |
| 문 화 진 흥 | 6,745,564 | 6,702,362 | 43,202 | - | - | |
| 통합재정안정화 | 45,190,899 | 44,387,469 | 803,430 | - | - | |
| 체 육 진 흥 | 1,531,832 | 1,500,335 | 31,497 | - | - | |
| 고 향 사 랑 | 899,574 | 899,574 | - | - | - | |